

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0. 7. 23.(금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
이경자 부위원장
송도균 위 원
형태근 위 원
양문석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가. 성원보고
 - 나. 국민의례
 - 다. 개회선언
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바. 의결사항

1) (주)더불어넷의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에 관한 건 - (2010-45-199)

-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의 보고를 받고, (주)더불어넷의 기간통신사업 폐지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.
- ※ 사업 폐지('09. 2) 이후 승인을 신청('10. 3)하여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, 이용자 보호조치를 적절히 수행하여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, 별도의 제재조치는 하지 않기로 함

2) (주)에스비에스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- (2010-45-200)

-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의 보고를 받고, 정당한 사유 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 명령('10. 4. 23)을 이행하지 않은 (주)에스비에스에 대해 「방송법」 제76조의3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6에 의거, 과징금 19억 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.

※ 한국방송공사와 (주)문화방송에 대해서는 이용자보호국장 전결로 '경고' 하기로 함.

○ (주)에스비에스의 시정명령 위반 내용

① “동시에 가격을 제시할 의무”를 위반

- 시정명령에 의하면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구체적인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4.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여야 하나, KBS·MBC는 이를 이행한 반면, SBS는 다음 날인 4. 27일(19시 30분 경)에 이를 제시

② 성실한 협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음

- 2010년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됨
 - KBS의 대면 협상 요청(4. 28)을 거부
 - 협상 종료일의 늦은 시간(4. 30. 18시 30분 경)에 이르러서야 수정된 대안을 제시하여 KBS와 MBC가 이를 검토한 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됨
 - 협상 종료 이전인 4. 30일(12시~15시) 광고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단독중계 의사를 시사
- 협상 과정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음
 - 한국·북한 경기와 개막·결승전의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음

— < 참고 :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시정명령('10. 4. 23 의결) 내용 > —

1. 정당한 사유 없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0년, 2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
2. 2010년 월드컵 중계권의 구체적인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2010. 4. 26일까지 상대방과 동시에 제시하고, 이를 토대로 같은 해 4. 30일까지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같은 해 5. 3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것
3.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의 구체적인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2010. 8. 31일까지 상대방과 동시에 제시하고, 이를 토대로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같은 해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고, 같은 해 8월부터 매월 말 1회씩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

사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0. 7. 29.(목),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1:45)

- ※ 11:30 정회, 11:40 속개